

법학교육과 법조양성 · 충원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관련하여-1)

韓 尙 熙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 目 次 >

I. 음모론?-사법개혁위원회의 직무유기

II. “1,200명”설의 문제점

1. 법조충원제도의 왜곡

2. 법학교육의 왜곡

3. 법조 자체의 왜곡-법치의 위기

4. 정리

III. 법학교육 및 법률전문가의 크기

1. 입학총정원과 법조인력수급의 문제

2. 입학 총정원의 산정

3. 법조인력수급의 문제

IV. 결 론

I. 음모론? - 사법개혁위원회의 직무유기

지난 2004. 10. 4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회의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법조양성제도로써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되, (다수의견에 의하면) 그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강조는 필자의 것)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현란한 생색내기의 뒷면에서 법조인구에 관한 논의는 슬그머니 소거해 버리고 말았다. 1968년의 3선개

1) 이 논문은 2000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현으로 이 땅에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조양성제도마저도 국가의 통제권내에 두기 위한 시도로서 사법연수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의 법조는 철저한 관료주의모델에 입각하여 양성·충원되어 왔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차에 걸친 정권의 교체와 굳센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도 민주적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한 최전선의 개혁과제가 되었어야 했을 이 시스템은, '사법개혁의 최적기'라고까지 평가되었던 금번의 사법개혁논의 속에서조차 법조인구통제장치의 혁파라는 의제가 상정되지도 못함으로써 그 개혁의 실질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고 대법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련의 음모론적 시도로 인하여 국내 유일의 공인된 폐쇄집단으로서의 법조는 여전히 그 권력성을 견지하게 되는 반개혁적 결과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러, 이 법조인구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으로 미루어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논의가 1994년 처음 시민사회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면서 법조인구의 숫자문제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였다. 혹은 유일한 개혁과제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와 비슷한 중량을 가지고 제기되었던 Law School안도 그 동조자중의 일부는 법조인구확대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문제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문제에 흡수시키면서도 그 실체에 관한 논의는커녕, 아예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기로 함으로써 차후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차단해 버리고자 하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그 주관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조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이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기할 전망도 난무한 터에다가 그 합격정수의 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조차 이 문제에 개입할 것 같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음모이다. 그것은 별도의 사법"개혁"위원회가 탄생하지 않는 한, 혹은 정치권에서 어떠한 "입법자의 결단"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현재의 합격자수를 최소 2011년까지는 동결시키는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²⁾

2)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조인구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한다. 자세한 것은 한상희, "변호사 적정수," 법과사회 제28호, 2004.12 참조. 미국에서 1920년대를 전후하여 변호사수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Ambulance Chaser"라는 담론이 신참변호사의 수를 통제하는 논거로 이용된 것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K. Lewellyn의 말은 우리의 현 과제와 관련하여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는 수준에서 그치고자 한다. "정직한 ambulance chaser는 '보다 좋은' 변호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그들은 학식있는 채 하는 사람(blue stocking man)보다 더 많은 것을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R. Stevens, Law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총정원의 문제와 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법조인구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논의의 틀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실체 없이 혹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다수의견의 명분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총정원 1,200명 제한설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1,200명”설의 문제점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대법원을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총정원을 1,200명 수준에서 한정하고 그 중 80%에 상당하는 1,000명 정도를 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생으로 선발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안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 중 다수의견의 형태로 그 실체가 반영되고 있어 적어도 문건 상으로는 나름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원제도의 기본 틀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도 그 질적 측면에 대한 통제의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조인구의 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따름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를 가진다. 즉, 그것은 법학교육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조인의 양성과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하등의 고민도 없이, 그것이 어떻게 되든 법조인구의 통제만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시킨다면 어떤 방식의 제도라도 받아들일겠다는 극단적인 직역이기주의적 방식의 반 법치적 발상에 의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³⁾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조충원제도의 왜곡

School, 1983, p.189에서 재인용.

- 3) 실제 미국의 경우 ABA의 인증평가(accreditation)제 자체도 네 가지의 의미의 시장-법학교수의 수급을 위한 시장, 법률교육시장, 법률서비스시장, 그리고 대학내 자원분배를 위한 시장-을 왜곡시키는 일종의 카르텔을 의미하며 따라서 독점금지법(Anti-Trust Act)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다. G. B. Shepherd, "Scholarly Restraint? ABA Accreditation and Legal Education," 19 Cardozo L. R. 2091 참조. 이 논문은 공급가격을 상승시키며 비용편익면에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반면 자유경쟁시장이 제공하는 정도의 성과도 못 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주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1,200명 주장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신규로 법조인이 되는 자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다. 이 주장의 내용처럼 1,200명의 입학생 중 약 80%정도인 1,000명이 변호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보다 정확히는 1,000명 정도가 변호사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200명을 선발하는 것임)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는 자의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함을 의미한다. 즉, 3년에 걸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중, 자연탈락이나 유급/낙제등의 학사를 이유로 한 탈락 등의 탈락자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수료생이 변호사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이러한 방식에 의할 경우 결과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낙제 등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거의 무조건적으로 변호사자격을 획득하게 됨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입학시험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마치 현재의 사법시험이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그 사법연수원을 별다른 문제없이 수료하게 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즉, 이 1,200명 주장은 현재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의 시스템이 법학전문대학원입학시험-법학전문대학원의 시스템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하게 되는 셈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의 합격 = 변호사자격취득]의 도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질과 공정성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적인 모델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직업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을 시키고 일정한 능력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은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일반적인 교양능력-추리력, 논리력, 이해력, 독해력 등-을 검증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적어도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전제요건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에 법률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장치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이 1,200명 주장에 의할 경우 거의 대부분 과거의 졸업정원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환언하자면 그 교육의 질에 대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될 것이다-, 가장 큰 진입장벽 내지는 통과예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입학시험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는 위 둘째의 결함과 연관되는 것으로, 1,200명 주장에 의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가 곧장 법조인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통과예례가

되며, 이는 곧 현재 법무부의 주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법조인자격시험제도가 대법원안에 의하면 몇 개의 대학원이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입학시험으로 변형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호사 자격시험이 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의 시행과정에서 현재 법무부가 담보하고 있던 법조충원과 정의 객관성, 보편성, 일반성 등의 장점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대학자치의 이념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량에 의하여 실시, 사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1,200명 주장은 바로 이런 대학자치의 이념과 결합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과정 자체를 이 소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량적 판단에 일임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예컨대 학부과정에서의 기여입학제와 같은 장치들이 주요 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생각해 보라)

2. 법학교육의 왜곡

문제는 이러한 법조충원제도의 왜곡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그 폐단이 법학교육 및 대학교육시스템 자체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왜곡

1,200명 주장이 가지는 폐해는 무엇보다도 법학교육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것이다. 즉, 그것을 시행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성과 등에 대하여 심각한 왜곡을 야기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 주장에 의하면 전술하였듯,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과정을 어떻게든 마치기만 하면 거의 100% 변호사자격을 획득하게 되며 별다른 경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요컨대, 시민사회가 주장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혹독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유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제1차년도 합격률이 50%이며 3차년도의 합격률은 25%에 불과한, 심각한 경쟁 체제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주3시간짜리 수업이 실질적으로는 주6시간 수업으로 연장될 정도로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과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안에 의하면 이러한 동기유인요소가 처음부터 제거됨으로써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⁴⁾ 물론 이에 대

4) 마찬가지로의 이유에서 이 1,200명 주장에 의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비용이 가중하게 책정됨으로써 야기되는 빈곤층, 소수계층 학생의 소외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많다. 실제 일본의 경우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급요건을 엄격히 하고 학사관리를 충실히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특단의 경쟁상황도 아닌 체제에서 이러한 기대는 거의 성립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1981년부터 실시되었다가 1988년 폐지되었던 졸업정원제의 실패경험⁵⁾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또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경우를 들면서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사법연수원의 수료성적이 법조경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교육체제 자체가 관료적 통제체제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의 동기유발 내지는 학습의 강제가 가능한 것일 따름이다. 반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제도설계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보다는 법조가 되고 난 이후의 경력이 향후의 재조법조로의 진입에 도움이 되는 법조일원화체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별다른 동기유발요인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야기된다. 학생교육의 차원에서 경쟁의 결여로 인한 성취동기 소멸현상이 나타난다. 학생의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그 과정에 다른 대학과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현재와 다른 별도의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교육할 동기 또한 유발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소수의 법학전문대학원간의 경쟁요인은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후술하듯,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즉, 학연 등 제1차적 귀속요인들에 의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유달리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은 어느 대학,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느냐 - 일종의 귀속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며, 그 귀속집단을 떠나 개인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를 차치한 채, 이상론을 현실론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논법이 되지 못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전문화에 장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또다른 목표 중의 하나는 법조인의 출신기반을 넓히

에도 처음에는 법과대학원의 등록금이 학부등록금의 2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다가 인가된 법과대학원의 수가 70여개교로 늘어나면서 이들간의 경쟁에 의하여 등록금이 하향조정, 현재는 학부등록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음은 법학전문대학원 시장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사회적 기회균등의 요청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분석은 위의 Shepherd의 논문에서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ibid.*, p.2097 참조.

5) 한국대학신문, “대학 50년사-졸업정원제의 음모,”

<http://www.unn.net/univ50Th/univ50ThRead.asp?idx=60> 참조.

고 그 전문영역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법률수요를 충실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1,200명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전원)합격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하여야 하는 만큼, 기존의 법학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별도로 특성화하거나 전문영역을 구축해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점은 현재 사법시험제도에 맞추어 백화점식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법과대학들이 사회적 수요와는 관계없이 법학교수들의 전공영역과 사법시험과목에만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 1,200명 주장의 경우 다른 대학/법학전문대학원과 경쟁의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장경쟁에 입각하여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법학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산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본연의 취지가 제대로 수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더불어 현재 일부 법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수법무대학원 등의 형태로 경제법, 기업법, 특허·지적재산권법 등의 특수법학영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불가능해 보인다.⁶⁾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적 시설의 기준을 12:1 혹은 15:1로 강화한다면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충당할 인력만을 충원 하는데에도 힘이 들 것으로 보이는 바, 그것을 넘어 이런 특수법무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대학의 학부교육의 왜곡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을 때 법조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였던 반론 중의 하나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학부교육은 그 자체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입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주로 그 법조인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이 1,200명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학부과정의 입시기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대법원의 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가 바로 현재의 사법시험과 같

6)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ABA의 인증평가제가 중위 내지 하위의 Law School이 다양하고도 다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Law School들이 자기혁신을 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Ibid, pp. 2098-9.

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새로이 충원되는 법조인 수를 1,000명으로 한정함으로써 법조인의 독과점적 지위를 계속하여 보장하고 있음. 즉 여전히 법조인이 되는 것 자체가 신분의 상층사다리를 타는 것을 의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학부의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교과목을 공부하기 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이 경우에 타당하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를 학부에서 자신의 전공에 어느 정도 충실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나, 엄밀히 이 또한 타당한 대응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의 틀에 의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지향하는 학부생이 입시의 과정에서 반영되는 학부전공영역의 교과목은 최소한으로 이수하면서 최고의 성적을 확보하고, 나머지의 시간은 적성시험이나 외국어시험 등의 준비에 일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즉, 학부생들이 학부의 교육과정을 통해 치열한 논리력, 이해력, 추리력을 확보하는 한편, 각 전공영역에 부합하는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편입시험 준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요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학부과정을 재조정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학부 교육과정은 형해화되는 양상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4)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사멸

이 주장에 의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임하게 될 교수의 수는 교수대비 학생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 240명(학생 15명의 경우) 내지 300명(학생 12명의 경우) 수준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연구인력만으로는 법학-그것이 이론법학이든 실용법학이든-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게 된다는 데 있다. 대체로 법학은 그 전공을 학술진흥재단⁷⁾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해 보면 법학일반(13개 전공), 공법(10개 전공), 사법(12개 전공), 분야별법(15개 전공), 기타(1개 전공) 등 51개의 세부전공이 존재한다. 위의 교수수를 이 전공으로 나누어보면 매 전공당 교수인력은 6명 정도에 불과하게 되며 전공별로 약간의 편중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전공의 경우 10여명 정도의 교수만이 학술에 관한 연구인력풀을 이루게 될 뿐이다. 학술의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⁸⁾

7) <http://www.krf.or.kr>.

8)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되는 만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점에서 법학학술의 발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민법교재를 저술하

그러나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수의 연구자원을 보완하는 연구보조인력 내지는 학문후세대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교에서는 일반대학원과정으로서의 법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교수의 연구를 뒷받침할 학문후세대가 존재하지 않게 될 우려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소한 교육·연구 시장에서는 학술적 저술에 대한 시장성·경제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러한 상태는 더욱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법학부 소속의 교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간은 학술연구의 상황이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절박성은 약화되기는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학부에서의 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법학교육은 점차 도태되거나 혹은 주변부 법학의 영역으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며 더 문제는 이 대학들의 경우 학문후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 자체가 거의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3. 법조 자체의 왜곡 - 법치의 위기

1,200명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기존의 우리 법조집단이 가지는 폐쇄적 성격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의 지배에 봉사하는 법조가 아니라 집단적·폐쇄적 네트워크의 불문율에 봉사하는 법조로 고착되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즉, 1,200명 주장은 법조의 출신배경을 한정된 학벌에 집중시킴으로써 학연귀속성이 강한 우리의 법조집단이 지나치게 협애화된 네트워크로 짜여지고 이를 통해 폐쇄집단으로서 그 기득권을 강화하는 이너서클을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자신들만의 내부그룹을 형성함으로써 법조권력을 공유하는 양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0년 현재, 지금까지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중국 장춘법정대학에 이르기까지 105개 대학이 있다. 그리고 이 중 1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도 32개 대학에 이른다.⁹⁾ 하지만, 대법원의 안에 의할 경우 불과 수개의 대학이 법조인의 양성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우리 법조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학벌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향후 변

더라도 그 판매량이 100부 내지 200부 정도에 국한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어느 출판사가 그 출판물 도모할 것인가?

9) 법률신문사, 2002 법조인대관, 2002에 의거, 빈도 추출함.

호사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법조인이 내부적으로 법조인을 평가하게 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이 독점으로 인한 폐쇄적 네트워크의 형성가능성은 법조사회 전체의 정당성마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암종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1,200명 주장은 사법개혁논의의 기본취지 그 자체에도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사법개혁의 본질이념이 국가의 통제밖에 사법을 위치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수요에 봉사하는 법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사법시스템을 설계하자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이 1,200명 주장은 오히려 법조인력양성시스템 자체를 국가의 밀착된 통제 하에 놓게 되는 한편 법조인들이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심상인 제도로 변질시켜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우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서비스의 독점으로 인한 공급자의 권력이 폐쇄적 네트워크의 존재로 말미암아 더욱 강화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자의 국가통제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가 소수로 됨으로써 발생한다. 즉, 소수의 특권적 법학전문대학원이 존재하게 되면 인가주체인 국가는 이 소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학원교육과정 등에 대한 국가-교육인적자원부등-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간섭과 개입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마디로 시민사회에 의한 법조양성이라는 개혁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바탕으로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는 법조양성제도 즉 무늬만 시민사회에 의한 법조양성의 제도로 변화되는 양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정 리

결국 1,200명 주장-실제 소수의 입학총정원을 예정하고 이를 일부 소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분배하고자 하는 일종의 독점시장론 모두를 포함한다-은 애당초 법학전문대학원안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개혁의지-사법서비스의 민주화, 전문화, 보편화-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 아니라, 그것이 법조권력을 소수의 제1차 집단에 분할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보다 악화시키는 일종의 퇴행적 변화이다. 실제, 이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법개혁의 이념에 충실하기는커녕, 그 사법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학교육이나 법조양성·충원의 질적 내용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혹은 소극적인 사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히려 이 주장들은 단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몇 개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분할하여 대법원이 가지고 있던 사법연수원의 업무를 경감, 처리하고 중

국적으로는 법조인력의 수를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함으로써 법조집단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자는, 가장 치졸한 수준의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실제 이 1,200명 주장의 논거는 없다. 단지 현재의 사법시험 정원을 감안하여 급격한 법조인수의 증가를 막아보자는 것이 그 논거의 전부이다. 혹은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의 적정수(optimum numbers)를 산정하고 난 뒤 그 구체적인 입학총정원을 결정하자는 것이 그 주장의 좀더 교묘한 표현방식일 따름이다. 하지만, 변호사 '적정수'라는 관념이 주로 Pareto최적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이득과 손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이 점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자격자의 수를 인위적·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국가가 없는 이유가 될 것이기도 하다-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와는 전혀 다른 법조인 혹은 법률전문가집단의 양성장치를 도입하는 마당에서 이 적정수의 관념은 제로 베이스에서 판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장이 전제하고 있듯 현상유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논거는 그 자체 역지에 지나지 않는다.

Ⅲ. 법학교육 및 법률전문가의 크기

1. 입학총정원과 법조인력수급의 문제

실제 위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총정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한 사항-그것이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은 한 가지의 점에서 결정적인 판단오류에 빠져 있다.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법조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교육의 문제라는 점이다. 물론 양자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조인력 충원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의 문제에 대하여 기껏해야 필요조건에 불과할 뿐, 그것이 후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핵심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입학총정원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법학교육여건을 감안하면서 법학교육의 필요성·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법조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만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조인력수급의 문제는 변호사라는 "자격자"의 숫자에 관한 문제인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총정원의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① 사회내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법

물서비스를 유상 판매할 수 있는 자-“변호사”와 ② 타인에 고용되거나 무상(혹은 임금을 받고)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구별되어야 하며, 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법조인력수급의 문제이며 ②의 문제는 법학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그 크기는 ① $\geq$ ②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혹은 획득하지 않는) 잉여의 법률전문가인력 즉 (②-①)의 부분은 주로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고용되어 법률사무를 정리(arrange)하면서 최종적 법률수요자인 기업·관공서와 최종적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혹은 법조인)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¹⁰⁾

이를 비교법제적으로 보자면 미국이나 유럽 등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①=②의 수준을 유지한다. 즉, 법학교육의 과정을 거친 자(②)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부여(①)함으로써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자는 자신의 지식을 상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질적 수준을 변호사윤리의 관점에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①과 ②의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①은 소수의 크기를 가지면서 송무사건을 중심으로 법정대리권을 독점하고 ②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내부전문가 즉 In-House Counsel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의 이원적 장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적 구조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본질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첫째가 학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법과대학에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며, 둘째가 우리 사회가 후기산업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법률서비스의 질과 내용의 측면에서 종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양해지고 심화된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서 나온 개선안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안이며, 이 안에 의하면 법학교육을 받은 자의 종류가 일차적으로는 ㉠ 법학부졸업자, ㉡ 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미취득자, ㉢ 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취득자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제도설계의 취지에서 보자면 이 구도에서 ㉠과 ㉡·㉢은 전혀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이 된다. 전자는 교양으로서의 법학을 이수하는 반면 후자는 전문직업교육으로서의 법학을 이수한다. 즉, ㉠의 경우에는 독자적·전문적 수준에서의 In-House Counsel이 되기보다는 일반적 수준에서 법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일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반면 ㉡

10) 실제 일본의 사법개혁논의는 이들도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업측의 요구에서 촉발되었다고도 한다. 일반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업 법무팀들은 송무를 할 수 없음에 비하여 일반 관공서의 직원들은 법률지식과 관계없이 송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과 ㉔의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전문직업교육으로서의 법학을 이수하되 단 하나의 차이는 변호사자격을 취득 하는가 아닌가-즉, 자신의 전문법률지식을 그 자체 상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일반적 노무의 형태로 타인의 이름 하에서 임노동화할 것인가에 있을 뿐이다.¹¹⁾ 환언하자면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상품화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직업군(㉔)과 그렇지 못한 직업군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조인력수급의 문제는 원론적으로 보자면 ㉔의 크기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특권(법률서비스를 상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하는 자-변호사업개업자-의 크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㉔에까지 확장되어 변호사특권을 누리지 않으면서 법률서비스를 '내부적'으로 혹은 타인의 이름하에 임노동의 형태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통제하거나 혹은 변호사법상의 특권을 가지되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개업하지 않은 변호사자격자의 경우-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¹²⁾

2. 입학총정원의 산정

이렇게 본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총정원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법학교육 혹은 법률전문가교육의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는 법률전문가-그가 변호사이든 아니든-의 수의 대한 일반 사회의 수요의 크기가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통제될 수 있으며, 이 통제장치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의 기본을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입학총정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학교수와 법과대학 등 법학교육에 종사하는 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차적으로 그 수료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입학총정원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월성 있는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보함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등의 교육능력, ②교육프로그램 등 피교육자 및 사회 내에서의 교육수요, ③

11) 특히 이 점은 우리나라처럼 유례없이 변호사의 업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그것을 배타적 영역으로 봉쇄하고 있는 변호사법체제를 가진 경우에는 더욱 타당한 분류가 된다.

12) 물론 이 경우에도 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률을 통제함으로써 양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바로 이 매개변수(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률)의 존재로 인하여 ㉔과 ㉔의 관계는 더 이상 직접 연계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상호간의 적절한 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나름의 특성화 전략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간 분업의 체제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를 확보할 필요성, 그리고 ④항후 우리 사회에서 예상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련하여 “적정한 법조인력수급”¹³⁾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이를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대학 현황에 비추어 살펴보자.

법과대학의 입학정원: 11,390명
 법과대학의 재학생수: 63,370명
 전임교수수: 921명
 (교수 1인당 학생수: 약 70명)

여기서 ① 법률실무가출신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으로 임용(또는 파견)되는 경우를 전 교원의 20%정도로 예정하고, ② 교수 1인당 학생수를 12명 또는 15명으로 하며, ③ 현재의 전임교원의 약 1/3은 계속하여 학부의 법학교육을 담당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해진다.

- ㉠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교원 수=600명+120명(실무가출신교원 20%)=720명
-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수=720명×12명(혹은 15명)=8640(혹은 10,800)
-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수=8640(혹은 10,800)÷3년=2880명(혹은 3600명)

즉, 우리나라의 현재의 법학교육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전제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최대한 2,880명(교수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할 경우) 혹은 3,600명(교수 1인당 학생수를 15명으로 할 경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우리나라의 법과대학 내지는 법학과(부)의 전반적이고도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교수들간의 이동이 가장 유연하다고 가정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③의 전제는 거의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며 약 40 내지 50%정도의 법학교육자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13) 실제 이 논의는 자칫하면 담론정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마치 법률시장에 “적정성”이라는 가치 기준이 존재하여 어느 수준에서는 법률시장의 공급을 통제하여야 할 정책적·법리적 필요성이 나타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진입통제의 논거로서의 “적정성”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적정성”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법률시장이 완전경쟁의 체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즉 시장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법률서비스의 공급량(즉 변호사 개업자의 수)이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을 정도의 잠재적 공급량(변호사자격자의 수)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정된다. 그렇다면 법조인력수급에 대한 고려가 없이 즉, 준칙주의의 방식으로 시장경쟁에 맡긴다 할지라도 2002년 현재의 자원을 전제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최대의 입학총정원은 2,500명에서 3,500명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이러한 통계추정치를 놓고 판단한다면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체크기를 결정하는 일종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실제 국가가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실질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한 시설이나 교육과정·교육내용을 가지는 교육기관을 사전에 혹은 사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질적 수월성을 가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¹⁴⁾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그 입학총정원을 통제한다면(즉 인가주의를 택한다면) 그 크기는 3,000명의 수준에서 정책운용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리고 이 총정원을 개별학교당 입학정원(50명 내지 150명 정도 예상)으로 나누면 약 30개 정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가능하며 이 정도의 수는 앞서 언급한 귀속집단에 의거한 폐쇄적 네트워크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나름의 경쟁시장을 확보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¹⁶⁾

14) 만일 법조인들의 일관된 요구처럼 국가가 교육의 과정에서 일정한 직역군의 인력수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든다면 그것은 그 자체 교육의 권리 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 되고 만다.

15) 이에 대하여 “인구 100만명당 법과대학 수가 0.8개”에 지나지 않는 미국의 예를 끌어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법과대학수가 2.2개에 달하여 너무 과다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 “3,000명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나(이창한 부장판사의 토론문중), 이는 비교방법의 기본에 있어 오류를 가지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 못된 비교방법론을 채용함으로써 야기된 오류이다. 미국의 경우 ①ABA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원과정의 Law School이 188개에 이르고 있을 뿐 이 주장에서 ②학부과정에서 법학을 교육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②와 관련, Findlaw.com에서 소개된 학부과정의 para-legal program만 해도 294개에 이른다. <http://stu.findlaw.com/schools/paralegal/fulllist.html> (2005.2.5 참고) 뿐만 아니라 Court Reporting School, Criminal Justice School, Legal Assistant School, Legal Administration School, Legal Secretary School 등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과라는 이름으로 포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과정만 해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 보기 나름으로는 미국은 법학교육이 수직 분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업체계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창한 부장판사의 반론은 객관적 오류에 빠져 있다. 즉, 미국의 Law School을 기준으로 하자면 미국의 188개와 한국의 법과대학 37개를 비교하여야 하며, 법학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자면 한국의 90개와 미국의 수많은 학부과정의 법학 교육프로그램 전체를 비교하여야 한다. 어느 쪽이나 미국에 비하여 한국의 법학교육시설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16) 이에 대하여 일간에서는 우선 1,200명 수준에서 입학총정원을 정하고 차후 그 정원을 늘여나가면 된다고 하는 순차적 결정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의 허구는 “차후 그 정원을 늘여나간다”는 점에 있다. 그것을 어떻게 누가 언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기

3. 법조인력수급의 문제¹⁷⁾

여기에 법률서비스에 대한 향후의 수요를 감안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물론 존재한다. 비록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결정에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필요조건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수료율, 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률 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때, 수료율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병역,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탈락하는 경우와 낙제, 유급 등 학사상의 이유로 강제적으로 탈락시키는 경우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¹⁸⁾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예측에 있어서는 변호사자격자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뿐 아니라, 변호사자격을 갖지 아니한 법학전문대학원수료자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료율과 합격률의 예상치를 감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총정원에서 변호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의 수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때문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는 마당에서까지 제1차로 선정된 법학전문대학원과 제2차로 선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제3차…… 등등으로 새로운 학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한 제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 안의 문제는 왜 순차적으로 인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의 설시가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단순히 “시행착오를 줄이자”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저 “골치 아프니” 법조집단의 요구를 우선 받아들여서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에 들어간 후 나중에 형편이 되면 시민사회의 압력을 등에 업고 그 정원을 늘여나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허무맹랑한 도피론에 불과한 것이다.

- 17) 거듭 말하거니와 이 부분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총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즉, 법조인력수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이며 입학총정원의 규모는 보조적 변수로 존재하고 있을 따름임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 18)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평가의 방식이나 그에 따른 탈락률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증평가기준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실제 현재의 대학평가기준에서는 재학률이 높은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입학정원	수료자 (탈락률 10%)	합격률 50%	합격률67%	합격률80%
1,200	1,080	540	724	864 ¹⁹⁾
1,500	1,350	675	905	1,080
1,800	1,620	810	1,085	1,296
2,000	1,800	900	1,206	1,440
2,500	2,250	1,125	1,507	1,800
3,000	2,700	1,350	1,809	2,160
3,500	3,150	1,575	2,111	2,520
4,000	3,600	1,800	2,412	2,880

위의 표에 의하면 매년 1,000명씩 합격시키는 현재의 사법시험을 감안하여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총정원은 합격률을 80%로 할 때에는 약 1,500명수준이 된다. 또 합격률이 67%(즉 응시자의 2/3이 합격)일 때에는 1,800명의 입학총정원을 예상해 볼 수 있다.²⁰⁾ 또 매년 변호사자격 신규취득자의 수를 1,500명으로 한다면, 합격률67%일 경우 2,500명의 입학총정원을, 그리고 합격률 80%일 경우 2,000명 정도의 입학총정원을 예정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이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탈락률은 10%로 함).

19) 이 점에서 항간에 대법원 등이 입학총정원을 1,200명 정도로 하고 합격률을 80%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하는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 만일 그러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입학자는 모두 변호사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셈이 되며(이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나마도 현재의 사법시험합격자수보다 적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

20)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법개혁논의의 결과 변호사자격취득자의 수를 3,000명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는 언급은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실제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건의서는 “새로운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연간 3,000명으로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빠른 시일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상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즉, 3,000명이라는 숫자는 하한선이며 따라서 향후의 추이에 따라 그 이상의 변호사총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합격률에 따른 입학총정원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50%	67%	80%
변호사 자격신 규취득 자수	1,000	2,222	1,658	1,389
	1,200	2,667	1,990	1,667
	1,500	3,333	2,488	2,083
	1,800	4,000	2,985	2,500
	2,000	4,444	3,317	2,778

이러한 계산들은 1,200명 주장의 허구를 그대로 드러낸다. 법조인력수급의 문제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총정원의 문제는 결국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반드시 양자가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자의 수를 확대하고 그들의 경쟁 속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을 50%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80%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계산할 수 있을 따름이다. 물론 이러한 합격률 통제 역시 양적 통제에 의거한 상대평가의 방식으로 제도화하기 보다는, 일정한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합격시키는 절대 평가제를 바탕으로 하되 난이도의 조절로 그 비율을 유지하는 질적 통제의 방식을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IV. 결 론

이상에서 거칠게나마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해 보았다.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제안이 시작된 1994-5년도에 사법개혁논의의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반대론은 그 제도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심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반대론의 주류는 대부분 현재의 기득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이기주의 내지는 직역이기주의의 틀에서 형성되어 왔고 따라서 그 논거의 대부분은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주의는, 모든 정책대안들이 그러하듯이 확실한 성공가능성을 갖춘

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의 관점에서 나름의 동조세력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법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잠복한 상태에서 법률시장의 불투명성이라는 회의론의 외관을 가진 채 일부 기득권집단의 동조와 더불어 되도록이면 소수의 규모로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하였듯 이 문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법조인력수급의 문제는 지난 십수년간의 사법개혁논의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고 사법민주화 및 법치의 형성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개혁요소이다. 더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학교육체제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법학교육 나아가 학문으로서의 법학제도 전반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발전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이 결정적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거시정책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해집단의 미시적 타협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단정적으로 말하건대,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총정원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은 그것이 다수의견이 되었건 소수의견이 되었건 모두가 지워져야 한다. 즉, 입학총정원의 문제와 변호사자격시험합격률의 문제를 혼탁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리시키고 양자의 유기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수준에서 별도의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일부 집단들의 직역이기주의에 봉사하거나 특권적 선민의식을 충족시키는-그래서 법조선민주의를 강화하는-방식으로 진행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점적 개혁과제로 제시되었던 것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이었다. 실제 언론개혁의 문제는 수미일관 미봉의 수준에서 일차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법개혁의 문제는 그 정도에도 이르지 못한 채 개악의 수준으로 퇴행하려는 순간에 있다. 지금까지의 사법개혁논의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현 정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 경감된다고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되는 추진기구에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여야 하는 구도로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제의 수행여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한 법조양성체제의 문제이다. 이제 거의 2년에 가깝도록 진행되어 왔던 사법개혁의 논의들이 개악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결실로 여물 것인지의 여부가 모조록 정치적 세력판도에 따라 달라지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를 앎기만 바랄 뿐이다.